

경북(포항)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추진을 위한

상호협력 업무협약서

대구대학교와 포항테크노파크 경북SW진흥본부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함)는 경북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위하여 두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바를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 간 경상북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,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상북도의 디지털전환 및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운영원칙)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하며, 호혜적 기반 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 단,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3조 (협약사항) 양 기관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을 협약한다.

1. 경북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전반의 연계 협력
2. 경북 디지털 기업 육성 및 전문 인재 확보를 위한 유인 체계 구축
3. 지역 산학연 R&BD 협업 프로젝트 공동 발굴 및 개발
4. 지역 디지털전환 전략에 따른 추진 과제의 공동 기획
5. 양 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사업 운영 시 인적·물적 자원의 공유
6.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 협력사항 등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

제4조 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서명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상호교류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5조 (협약서 효력)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하되 상호 협의 하에 일부 보완 및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협약서 유효기간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
제6조 (수정 및 변경 및 해지) 본 협약은 양 기관 간 서면합의에 의해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해지할 수 있다.

1. 당사자 중 일방이 협약사항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
2. 양 기관이 환경 및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따라 협약내용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양 기관이 사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본 협약이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합의한 경우

제7조 (기타사항)

1. 본 협약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에 협의와 신의·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.
2.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관 대표의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3월 27일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장 박순진

박순진



원장 이점식

이점식